

□ 변경 대비표

효력발생일 : 2022년 05월 27일

신한중소형주알파증권투자신탁(주식)  
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
-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: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투자신탁(주식)"이라 한다. ②~③ (생략)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투자신탁(주식)"이라 한다. ②~③ (현행과 동일)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: 제15조(투자대상자산)	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범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	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범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: 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(이하 생략)	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(이하 현행과 동일)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b>제3영업일</b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b>3영업일</b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b>대차대조표</b>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b>재무상태표</b>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37조 (보수)	제37조 (보수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제37조 (보수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 <b>신설</b> >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 <b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b> )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
-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	(子)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투자신탁(주식) (母)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(子)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투자신탁(주식) (母)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, 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집합투자증권: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2.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b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 3.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b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1. 집합투자증권: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2.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 <b>삭제</b> 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, 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2. (생략)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b>	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2. (현행과 동일) <삭제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삭제>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: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신설>	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 <b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b> )
3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<b>23.92%</b> , 2등급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: <b>23.57%</b> , 2등급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
3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
3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4월30일)</b>
4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<b>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4월 30일)</b>
5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: 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<b>- 최근현황 갱신</b>
5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- <b>최근현황갱신</b>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<b>최근현황갱신</b> 라. 운용자산 규모 -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22년 04월 30일)</b>

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**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
-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-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	(子)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투자신탁[주식] (母)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(子)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투자신탁[주식] (母)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1. 펀드명 변경(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포함): [요약정보]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2. 투자전략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한 <b>뉴그로스중소형주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2. 투자전략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한 <b>중소형주알파</b>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2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[요약정보] 기준가격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3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: [요약정보]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<b>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4월 30일)</b>
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<b>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2년 04월 30일)</b>